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고용노동관서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3. 9. 00. ~ 9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조직	정원
지방고용노동관서 13개 과	0명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42